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8. 2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 결과

가. 제출일자 : '95. 7. 31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95. 8. 14

다. 상정일자 : 제36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행정재무위원회 ('95. 8. 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자치법규를 공포할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자치단체장이 공포할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도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중 조례의 경우 구청장이 공포할 경우 구보에의 게재로써 이를 공포하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의 게재로써 공포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허영훈)

동조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전에는 '95. 7. 1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4703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전에는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구청장이 공포하는 경우나, 모두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 하였으나, 금번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공포방법을 이원화하여 구청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동조례의 조례 공포방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이는 공포권자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반해 구보의 발행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 등을 감안하여 조례의 공포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동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1995. 7. 3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4701호 '95. 7. 1) 되어 현재 자치법규를 공포할 경우 공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자치단체장이 공포할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중 조례의 경우 구청장이 공포할 경우 구보에의 게재로써 이를하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의 게재로써 공포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701호 개정 '95. 7. 1) 제12조 제1항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합의사항 : 없음

4. 조례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구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구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